

신구조문대비표
「관세법」

관세법 [법률 제18583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	관세법 [법률 제18976호, 2022. 9. 15., 일부개정]
제18조(과세환율)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(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일 한 날을 말한다)이 속하는 주의 전주(前週)의 외국환매도율 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.	제18조(과세환율)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(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일 한 날을 말한다)이 속하는 주의 전주(前週)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.